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
2020.6.9.(화)

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 문 석

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임영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, 2020년 6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된(의안번호 제426호) 안건임.

1. 발의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와 교류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·태풍·해일·폭우·화재·감염병 등 재난·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교류 중인 외국 자치단체에게 재난·재해 등에 대해 구호지원 규정 마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재난·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함